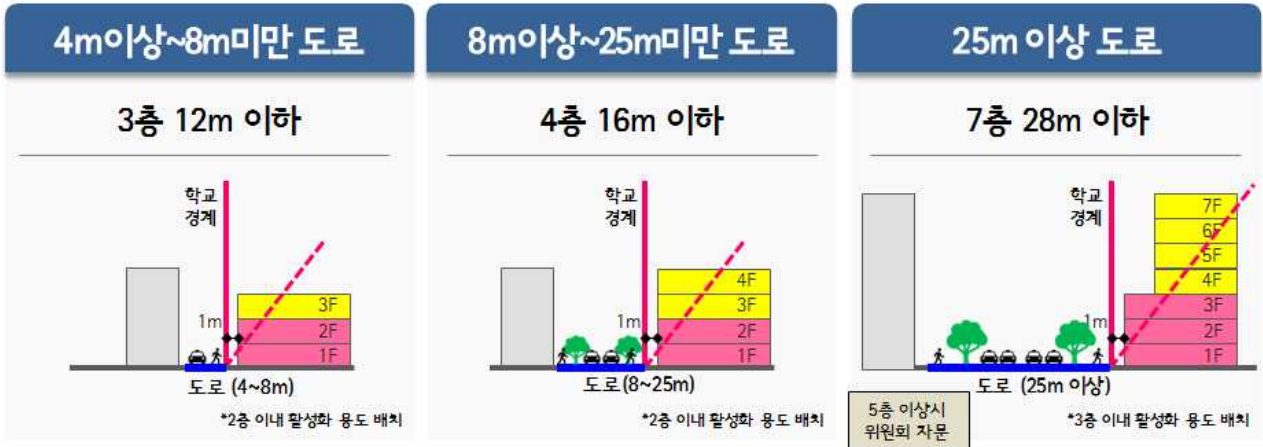


[별표 1]

가로활성화 용도 및 세부 적용기준 (4-2-3. 관련)

1. 가로활성화 건축물의 규모 기준

가. 연결 도로(가로) 폭원별 도입 가능한 가로활성화 건축물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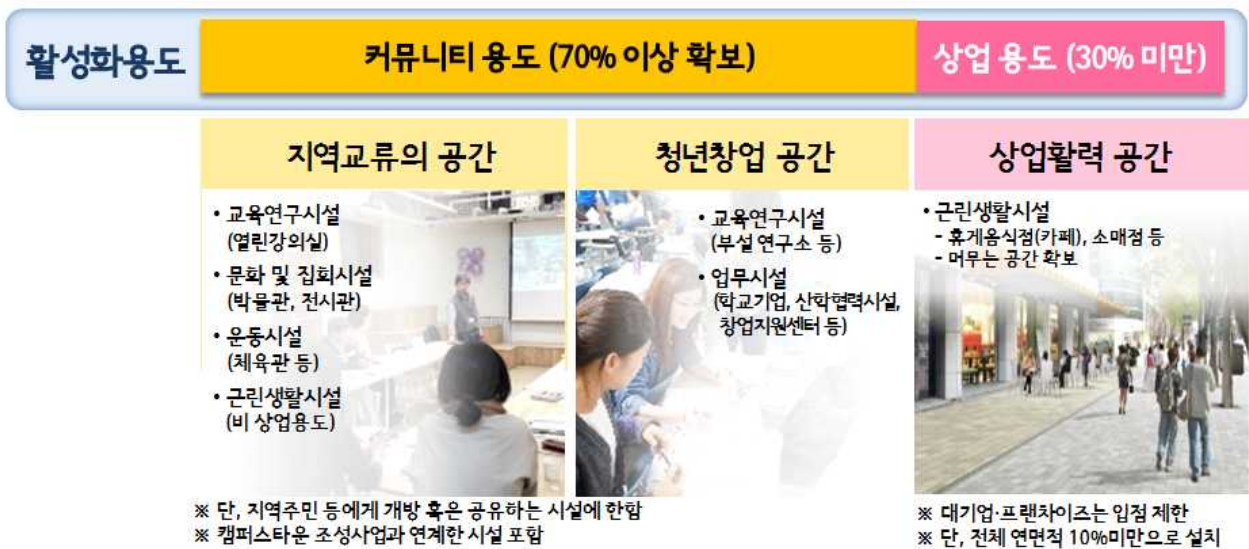


※ 건축한계선 지정 : 대지 경계로부터 1m 이상

※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규모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.

2. 가로활성화 용도 정의

가. 가로활성화 용도는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혹은 공유하는 시설인 커뮤니티 용도와 카페, 소매점과 같은 상업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, 그 비율과 세부적인 용도는 아래와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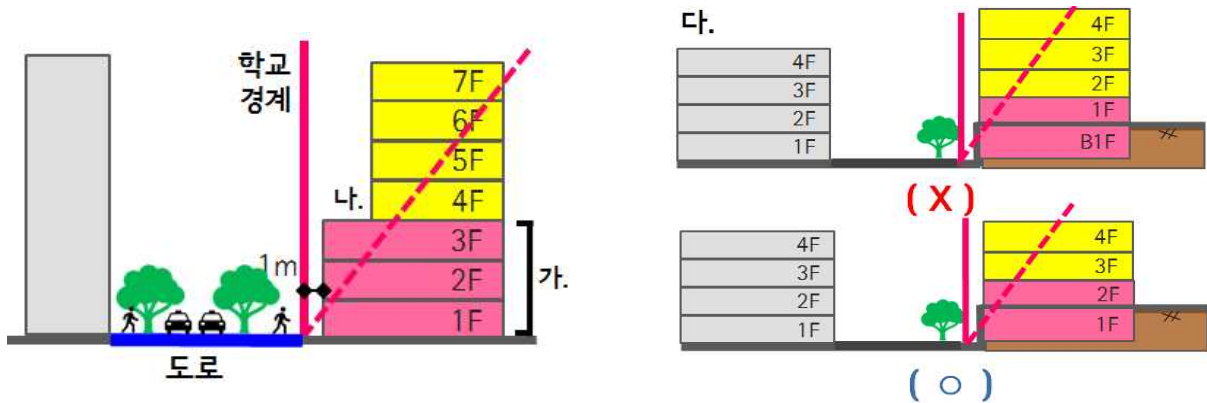
※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상업용도는 전체 가로활성화 용도 면적 중 30%미만 까지 가능. 단, 30%를 초과하여 계획할 경우 지역상권위원회(가칭)와 설명회 등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.

※ 대기업·프랜차이즈란

- 대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 개설하는 업종
- 프랜차이즈 가맹점 :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

3. 가로활성화 건축물의 세부기준

- 가. 가로활성화 용도는 지상부 노출연면적의 30%이상 확보
- 나. 고층부(4층이상) 벽면한계선 도입(※ 5층 이상 건축시)
- 다. 건축물의 층수는 활성화 대상 가로에서의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



4. 가로활성화 건축물 설계 기준(권장)

- 가. 활성화 용도의 주 진입구는 가로변 배치(CPTED,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려)
- 나. 1층 전면의 50% 이상 투시형 설계 권장
- 다. 야간조명 설치, 분절부에 미술품, 식재 등 권장

**활성화 용도의 주 진입구는 가로변 배치
(CPTED,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려)**

투시형 설계

1층 전면의 50% 이상 투시형 설계 권장

환경개선

야간조명 설치, 분절부에 미술품, 식재 등 권장

실질적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설계지침의 제시